

NEWSLETTER

May 2020

자본시장 그룹
Capital Markets Group

CONTACT



변호사 오현주

T: 02.772.4690
E: hyunjoo.oh@leeko.com

변호사 현승아

T: 02.772.4389
E: seunga.hyun@leeko.com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경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2019. 5. 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9. 8. 08.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2020. 3. 05.에 이르러서야 가결되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i)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규정중심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ii)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확대하며, (iii) 경영·부수업무의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규제 내용, 사후보고 대상 등 세부적 사항에서 개선방안과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규제 완화

가.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

개정안은 정보교류차단 규제에 있어 금지행위를 열거하는 대신 정보교류 차단 의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중심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임직원의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설비 분리과 같은 형식적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금융투자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준·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하위 법규에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필수 원칙을 제시하고 협회 자율규제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개선방안과 달리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준법감시인 등의 처벌 위험이 감소하였으며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사외 정보교류차단 규제 역시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중심규제를 도입하였고, 형식적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개선방안에 따라 하위법규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임직원 겸직제한이 도입될 수 있으므로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나. 정보단위규제로의 전환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가 아닌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보단위를 기준으로 정보교류차단 조치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정보단위로 미공개중요정보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정보단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는 고객자산 운용정보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보단위규제에 관해서는 설치대상 정보, 정보별 규제형태, 정보별 금지행위 등 주요 사항이 하위 법규에 맡겨져 있으므로 향후 제정될 하위 법규의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정보교류차단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리서치연구에도 정보단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행위규제 신설 및 사후통제

개정안은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운영할 의무사항으로, (1)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차단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행위의 직접 규제로서 정보교류 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정보의 이용행위만을 금지하고자 했던 개선방안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정보교류차단의 운영에 관한 사후통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의 설계·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이해상충 행위의 직접 규제에 따른 사후통제는 강화되었습니다. 정보교류 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를 하는 경우,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 다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비해 강화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업무위탁 규제 완화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 중 핵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하던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위탁가능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위탁이 금지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위탁한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위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IT기업에 대한 위탁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 외국계 증권회사의 경우 재위탁을 통해 글로벌 본사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위탁에 따른 사후통제가 강화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위탁시 위탁한 자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이 명시되었으며, (2) 동의 없는 재위탁을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후보고원칙을 도입하고자 했던 개선방안과 달리 업무 위탁에 따른 사전보고의무는 개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경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경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신 개정안은 부수업무뿐만 아니라 경영업무에 대해서도, (1)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제한·시정명령의 절차적 요건은 기존 규정에 비해 강화되었습니다. 제한·시정명령은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경영·부수업무에는 사후보고 원칙이 도입되었으나,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는 경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개정안은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경영·부수업무 규제를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규제수준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보교류차단에 관하여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요구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재위탁에 사용자책임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금융위원회가 경영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외에도 2020. 4. 29.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핀테크 활성화, 금융업 간의 융합 및 경영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춘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의 경향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의 하위법령 개정, 행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